예 산 총 칙

(단위 : 천원)

2007년도 [1회추경]

제 1 조 : 200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	회	Я		별	세입·세출 예산 총액	일시차입 한도액
	총			계	803,332,231	24,099,967
	일	반	회	계	614,869,883	18,446,096
	특	별	회	계	188,462,348	5,653,871
	공	기 업	특 별	회 계	25,758,675	772,760
		상 수 도 사	업	특 별 회 계	25,758,675	772,760
	기	타 특	별	회 계	162,703,673	4,881,111
		하 수 도 사	업	특 별 회 계	16,098,186	482,946
		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 이 주 사	을 주 민 업	특 별 회 계	77,676,127	2,330,284
		의 료 보 호 기	己	특 별 회 계	4,000,879	120,026
		새 마 을 소 득 사 업 운 영	관 리	특 별 회 계	845,451	25,364
		구 획 정 리 사	업	특 별 회 계	267,704	8,031
		도 시 개 발 사 업	!	특 별 회 계	53,264,520	1,597,936
		주 택 사	업	특 별 회 계	1,880,674	56,420
		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	사 업	특 별 회 계	632,986	18,990
		경 영 사	업	특 별 회 계	295,000	8,850
		공 유 수 면 매 립 <i>/</i>	나 업	특 별 회 계	1,250,083	37,502
		농 공 단 지 조 성 /	나 업	특 별 회 계	174,329	5,230
		공 업 용 지 조 성 사 업 위	수 탁	특 별 회 계	1,464,828	43,945
		주 차	장	특 별 회 계	4,852,906	145,587

제 2 조 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: 2007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37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: 일반회계 예비비는 4,956,919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: 지방재정법 제47조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1. 인건비 2. 복리후생비 3. 반환금 및 기타 4. 지방채상환 원리금

제 6 조 :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로 간주처리한다.

제 7 조 :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.